

Part 5.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공공시설물,

점유면적 최소화, 시설물간 통합으로 도시경관이 시원해진다.

혼란하고 무질서한 거리에 질서 부여와 통합으로 개방감 확대

사용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10원칙 제시

도시공간의 기능성 강화, 효율성 제고, 심미성확대를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은 거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로써
사용자 중심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치 및 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의 공공시설물은
원칙과 기준 없이 채도가 높은 색채, 과도한 장식과 형태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왔다.

그 결과 서울은 양적 성장에만 머물러 있을 뿐
그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은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공공시설물은 장식성보다는 안전성과 편리성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하며,
도시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

공공시설물의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통합시켜
도시공간의 밀도는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시설물들이 도시공간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의 개성을 되살려 혼란한 도시에 질서를 부여할 때,
서울은 보다 본질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이미지가 구축되고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근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서울은 공간규모나 인구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지 오래지만 양적인 성장에 머물러 있을 뿐, 그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은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즉, 인구 밀집에 따른 독특한 도시디자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디자인 욕구에 무계획적으로 따라감으로써 한정된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도시디자인 요소들이 밀집하게 되었으며,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진 도시로 변하고 있다.

급속한 성장과 개발에 따른 환경에 대한 배려 부족 및 산업과 기술, 속도와 자동차 중심의 개발로 사람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나치게 복잡한 형태와 고채도의 색채사용으로 인한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무질서한 설치로 인한 상호기능 침해, 사용자에게 배려 부족, 일관적이지 못한 설치로 인한 연속성의 부재 등 그동안 공공시설물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혼재 설치되어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어 왔다.

현황분석

- | | |
|-----|---------------------------------|
| 기능성 | ● 지나치게 복잡한 형태 및 색채로 기능성 저하 |
| 통합성 | ● 무질서한 설치로 상호 기능 침해 |
| 안전성 | ●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부족 |
| 보편성 | ● 다양한 사용자에게 배려 부족 |
| 환경성 | ● 색채가 자극적이어서 주변환경과 부조화 |
| 연속성 | ● 디자인에 일관성이 없어 도시경관의 연속성 저해 |
| 정체성 | ● 형태, 색채, 재료 등에서 서울의 정체성 표현이 부족 |



2. 기본방향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공공시설물의 기능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

사용자 중심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기능을 우선시하는 공공시설물, 통합하는 공공시설물, 안전한 공공시설물, 사용자를 배려하는 공공시설물, 차별하고 정제된 공공시설물, 일관된 공공시설물, 서울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시설물의 개선을 위해 시행할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기능성	불필요한 장식성보다 기능성을 우선하는 디자인
2	통합성	시설물간 연계와 통합으로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디자인
3	안전성	사용자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디자인
4	보편성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 및 장애 없는(barrier-free) 디자인
5	환경성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형태의 디자인
6	연속성	표준화를 통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디자인
7	정체성	서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디자인



3. 공공시설물 디자인 10원칙

01

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장식적인 형태요소 최소화

제한 구 마크(상징) 등의 형상화 및 기능과 관련 없는 과도한 장식 요소 적용



권장 기능을 우선하여 디자인



02

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간 통합

제한 보행에 방해가 되는 과도한 규모 및 지나친 조형성을 강조한 형태



권장 가로화분대+벤치, 가로등주+휴지통, 신호등주+가로등+안내사인, 가로등주+조명제어반 등 연계 가능한 시설물간 통합



03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 확보

제한 주변 경관을 차단하는 형태 및 재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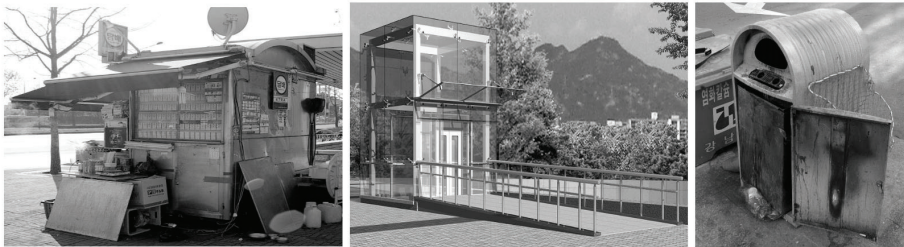
권장 주변 경관과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의 최적화 및 투명한 재질 사용



04

시설물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공간 확대

제한 좁은 보도에 가로판매대, 휴지통 등 공공시설물 과다 설치



권장 벽 부착형 휴지통, 규격화된 가로판매대 등의 적용으로 보도 점유 최소화 및 보행공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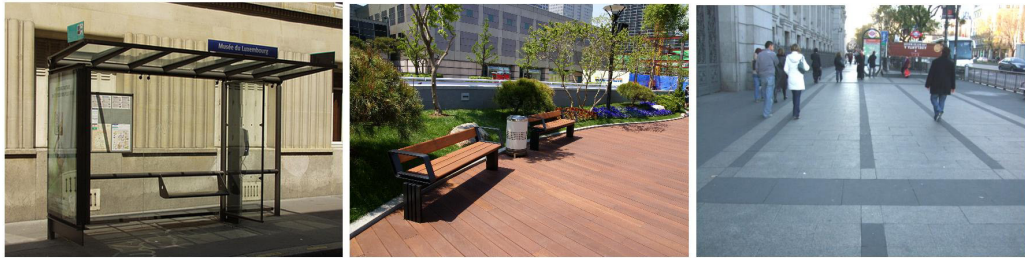
05

다양한 색채의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적용

제한 고채도의 자극적 색채 사용



권장 재료 자체의 색이나 무채색,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사용



06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한 알루미늄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인공재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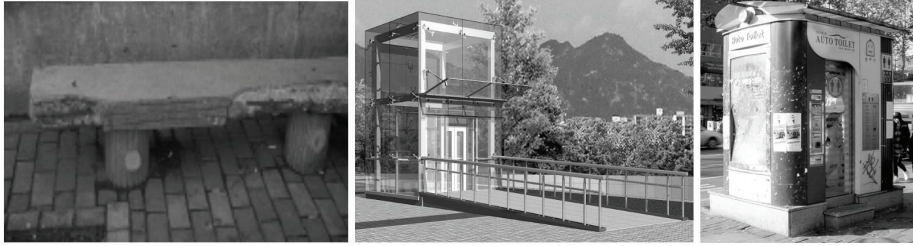
권장 방음벽, 옹벽, 파고라 등에 친환경적인 식생 적용



07

안전성과 범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 제한**
-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형태, 재료의 사용
 -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



권장 사용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08

교통약자 등을 배려한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제한** 턱이 높은 보도, 규정과 다르게 설치된 볼라드 등으로 보행 방해



권장 보도 턱 낮추기, 규정에 맞는 볼라드, 보행공간이 확보된 보도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09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한 표준형 디자인 우선 적용

제한 가로판매대, 맨홀뚜껑 등 일관성이 결여된 형태 사용



권장 표준형 디자인 개발 · 적용으로 다양함 속에 통일된 디자인 추구



10

경사진 장소 등에서도 항상 수직과 수평을 유지

제한 도시공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 기울어져 심리적 불안감 조성



권장 항상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 및 유지 · 관리하여 도시공간의 시각질서 확립



4.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물



벤치



맨홀



자전거보관대



공중화장실(부스형)



교통신호제어기



휴지통



관광안내소



공중전화부스



버스쉼터



가로판매대



지하철 환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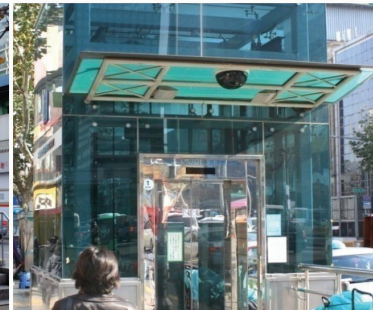
택시쉼터



가로등



지하철 캐노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물



보 도



점자블록



보차도 경계석



육 교



블라드



가로화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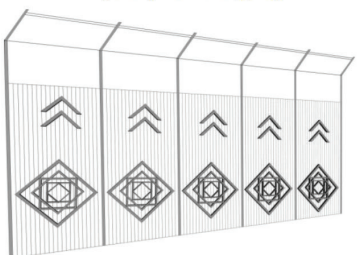
가로수 보호덮개



교 량



보호펜스(방호울타리)



방음벽



옹 벽



터널 전면부 옹벽



무단횡단방지시설



신호등주



지상기기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 이미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 이미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 이미지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1

개요

1.1 정의

본 가이드라인은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 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일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 쓰이는 적용 대상의 명칭이나 정의는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현행 관련법상 명칭이나 정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2 목표

-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구현한다.
- 사용자 중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실현한다.
- 공공시설물 디자인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1.3 이용 지침

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심의, 발주,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3.1 적용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원칙적 측면을 다룬다. 구체적인 사안별 적용의 수준과 예외 사항 처리 등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3.2 적용 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의 물리적 기능 및 의장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정보 전달 기능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공간상 배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다.

1.3.3 규정 유형

공통 및 세부 가이드라인은 필수 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나뉘어 기술된다. 강제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규정 사항은 디자인 심의, 발주, 실행, 유지 관리 시 고려 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3.4 가이드라인 규정 항목

본 가이드라인의 각 적용 대상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규정된다.

1.3.4.1 색채

대상에 적용되는 색채의 속성을 규정한다.

1.3.4.2 그래픽 요소

대상에 포함되는 문자, 픽토그램 등 그래픽 요소의 속성을 규정한다.

1.3.4.3 형태

대상에 적용되는 형태의 속성을 규정한다.

1.3.4.4 재질

대상에 사용되는 재료의 속성을 규정한다.

1.3.4.5 설치

대상의 설치 여부, 위치, 환경, 크기, 다른 대상과의 관계, 설치 시 유의점 등을 규정한다.

1.3.4.6 기타

상기 이외에 대상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항목의 속성을 규정한다.

1.4 적용 대상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기능에 따라 총 45종으로 나뉜다. 적용 대상의 분류와 다른 부문의 참고 적용 대상은 [표-1]과 같다.

[표-1]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분류

공공시설물		참고 공공공간	참고 공공건축물	참고 공공시각매체	참고 옥외광고물
대분류	소분류				
휴게 시설물	벤치	- 보행 가로 - 광장 - 친수 공간 - 도시 공원 -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 공개 공지	- 공공청사 - 동 주민센터 -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그늘막	도시 공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위생 시설물	휴지통	- 보행 가로 - 광장 - 친수 공간 - 도시 공원 -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 공개 공지	- 공공청사 - 동 주민센터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 우체국 - 전화국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공중화장실	보행 가로	공중화장실		
	음수대	보행 가로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서비스 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 보행 가로 - 자전거 도로 - 도시 구조물 주변 공간	- 공공청사 - 동 주민센터 -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 우체국 - 전화국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관광 안내소	보행 가로		관광 안내	
	공중전화 부스	보행 가로			
	우체통	- 보행 가로 -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 공공청사 - 동 주민센터 - 우체국 - 전화국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 우체국 - 전화국		
판매 시설물	가로 판매대	- 보행 가로 - 친수 공간 - 도시 공원			

(다음 쪽에 계속)

공공시설물		참고 공공공간	참고 공공건축물	참고 공공시각매체	참고 옥외광고물
대분류	소분류				
통행 시설물	버스 정류장 쉼터	• 보행 가로		• 버스 정류장 표지	
	택시 정류장 쉼터			• 택시 정류장 표지	
	마을버스 정류장 쉼터			• 버스 정류장 표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 지하철역 표지	
	지상 노출 승강기				
	보도블록	• 보행 가로 • 옥외주차장			
	점자블록	• 보행 가로		• 장애인 안내	
	보차도 경계석	• 보행 가로 • 자전거 도로 • 자동차 도로 • 옥외주차장			
	육교	• 보행 가로			
	교량	• 도시 구조물 주변 공간			
	고가차도				
녹지 시설물	가로 화분대	• 보행 가로			
	가로수 보호 덮개	• 보행 가로			
	가로수 지주대	• 도시 공원 •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 옥외주차장 • 공개 공지			

(다음 쪽에 계속)

공공시설물		참고 공공공간	참고 공공건축물	참고 공공시각매체	참고 옥외광고물
대분류	소분류				
보호 시설물	블라드	• 보행 가로	• 공공청사 • 동 주민센터 • 소방서 • 우체국 • 전화국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보호 펜스	• 보행 가로 • 자전거 도로 • 도시 공원 •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 옥외주차장	•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방음벽	• 보행 가로	• 공공청사		
	도로변 옹벽	• 도시 구조물 주변 공간	• 동 주민센터 • 우체국 • 전화국 •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 의료 관련 건축물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터널 전면부 옹벽	• 자동차 도로			
	무단횡단 방지 시설			• 무단횡단 금지 표지	
	신호등주	• 보행 가로	• 경찰서 • 지구대 • 치안센터 • 소방서 • 119 안전센터	• 신호기	

(다음 쪽에 계속)

공공시설물		참고 공공공간	참고 공공건축물	참고 공공시각매체	참고 옥외광고물
대분류	소분류				
관리 시설물	지상 기기	• 보행 가로			
	교통 신호 제어기				
	맨홀	• 보행 가로 • 자전거 도로 • 자동차 도로			
	트랜치	• 보행 가로 • 자전거 도로 • 자동차 도로 • 친수 공간 • 옥외주차장			
	지하철 환기구	• 보행 가로	• 공공청사 • 동 주민센터 •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제설시설	• 보행 가로 • 자전거 도로 • 자동차 도로			
	CCTV				
	버스전용 단속초소				
	주차관리				
조명 시설물	가로등주	• 보행 가로 • 광장 • 친수 공간 • 도시 공원 •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 • 옥외주차장 • 도시 구조물 주변 공간 • 공개 공지		• 교통 안전 • 도로 안내 • 주차 안내 • 신호기 • 보행자 안내 • 도로명 • 건물 번호	
기타 시설물	디지털 영상매체	• 광장 • 도시 공원 • 공개 공지 • 디지털 영상매체	• 공공청사 • 동 주민센터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 주택	• 디지털 영상매체	• 전광류
	시계탑	• 광장			
	상징 조형물	• 도시 공원			
	벽화	• 공개 공지			
	공사장 가림막·가림벽	• 보행 가로			

(표 끝)

2 기본 방향

2.1 현황 및 문제점

서울의 공공시설물이 내포하는 문제점 중에서, 시급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2.1.1 기능성 측면

디자인이 지나치게 장식적이어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2.1.2 통합성 측면

통합과 조정 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시 경관이 복잡해진다.

2.1.3 안전성 측면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위험 유발 요소가 된다.

2.1.4 보편성 측면

다양한 연령과 신체적 조건의 사용자들을 배려하지 못하여 보편성이 떨어진다.

2.1.5 환경성 측면

형태와 색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자극적이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시각 공해를 일으킨다.

2.1.6 연속성 측면

디자인에 일관성이 없어 도시 경관의 연속성이 저해된다.

2.1.7 정체성 측면

형태, 색채, 재료 등에서 서울의 정체성 표현이 부족하다.

2.2 개선 방향

본 가이드라인은 서울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2.1 기능을 우선시하는 공공시설물

장식성보다 기능성을 우선으로 디자인한다.

2.2.2 통합하는 공공시설물

시설물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2.2.3 안전한 공공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 및 철거 관리를 철저히 한다.

2.2.4 모두를 배려하는 공공시설물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 및 장애 없는(barrier-free) 디자인을 적용한다.

2.2.5 차별하고 정제된 공공시설물

무계획적인 색채 적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형태를 사용한다.

2.2.6 일관성 있는 공공시설물

적절한 표준화를 통하여 도시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2.2.7 서울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공공시설물

서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구현하는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한다.

3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10대 원칙

본 가이드라인은 현황 분석과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공공시설물의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 1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시하여 디자인한다
- 2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들을 통합한다
- 3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 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 4 시설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 5 무계획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한다
- 6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한다
- 7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8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 9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한다
- 10 시설물이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마감 부위가 미려하도록 치밀하게 설치한다

3.1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시하여 디자인한다

-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한다.
- 가급적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그림 1. 지나치게 장식적인 보호 펜스

3.2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들을 통합한다

- 시설물이 위압감을 주거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한다.
- 기능이 연관된 시설물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경관을 시원하게 한다.



그림 2. 위압적인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3.3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 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 시각적, 심리적으로 개방성 있고 시원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투명한 재료 사용으로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그림 3. 개방성이 떨어지는 버스 정류장 쉼터

3.4 시설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 크기의 최적화와 통합으로 시설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며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 보도폭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참조)



그림 4. 보행을 방해하는 휴지통

3.5 무계획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한다

- 주변 환경에 쉽게 조화되는 저명도, 저채도 색의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 자체의 색을 존중하여 활용한다.



그림 5. 자극적인 색채의 볼라드

3.6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한다**

-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그림 6. 콘크리트로 조악하게 목재를 모방한 벤치

3.7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사용자의 인체 치수를 고려하며,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그림 7. 보도변에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블라드

3.8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턱 낮춤, 보도폭의 확대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림 8.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불가능한 공중전화 부스

3.9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한다**

- 단순성 및 결합성을 바탕으로 시설물을 표준화한다.
- <표준형 디자인>의 적절한 활용으로 서울시의 정체성을 제고한다.
- <서울색>과 <서울서체>를 적절히 활용한다.



그림 9. 지나치게 산만하고 복잡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가로 판매대

3.10 **시설물이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마감 부위가 미려하도록 치밀하게 설치한다**

- 경사진 장소 등에서도 시설물이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평탄성을 유지하며, 이음새는 긴밀하게 한다.
- 시설물 간 또는 시설물과 지면의 결합에서 심미성을 높인다.



그림 10. 지면 결합 부위의 심미성이 떨어지는 시설물

4 세부 가이드라인

4.1 휴게 시설물: 벤치

4.1.1 현황 및 문제점

- 디자인이 산만하다.
-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색채가 사용된다.
- 시멘트로 자연 재료를 조잡하게 모방하여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림 11.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의 예

4.1.2 디자인 가이드라인

4.1.2.1 색채

- 가 목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을 지양한다.
- 나 주색(등받이와 앉음판의 색)과 보조색(기타 부위의 색)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다 보조색에는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단, 페인트 도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채도 색을 사용한다.
- 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사용한다. <서울색 경관별 색채 가이드라인 참조>

4.1.2.2 형태

- ★ 가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 나 구조(등받이 각도, 앉음 판 높이 등) 결정시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의 참조를 권장한다. (예: 앉음판 높이는 $400 \pm 30\text{mm}$)
- 다 배치 장소에 따라 등받이 유무를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라 테마공원이나 특화된 거리의 벤치에는 공간의 특성에 알맞는 개성있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한국기술표준원(www.sizekorea.go.kr) 참조.

4.1.2.3 재질

- 앉음판에는 나무, 우레탄 등 부드러운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4.1.2.4 설치

- ★ 가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공해가 심한 곳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 나 조명(가로등, 보안등 등)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12. 앉음판에 우레탄을 부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예

- 다 잔디 위 직접 설치하는 지양한다.
- 라 화단, 가로 화분대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을 권장한다. 단, 휴지통, 음수대 등 위생 시설물과의 통합은 지양한다.
- ★ 마 보행자의 이동성이 높은 지역에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벤치의 설치를 지양한다.
- 바 보행로의 결절점, 건물의 입구부, 광장, 오픈스페이스, 보행전용가로 등 보행자가 머무는 장소에 벤치 설치를 권장한다.
- 사 벤치 설치시 벤치에서 시작적인 폐쇄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주변 활동이나 흥미로운 정경 등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다.
- ★ 아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디자인 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13. 보행자가 많이 머무르는 가로의 벤치 추가배치



그림 14. 공원 입구부의 벤치 및 화단 설치

4.1.2.5 기타

- 조립부(다리 고정 볼트 등)의 볼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15. 주거지 입구부의 벤치설치

4.2 휴게 시설물: 그늘막 (파고라)

4.2.1 현황 및 문제점

- 단한 구조로 설치되어 경관을 답답하게 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형태 및 색채가 적용되어 있다.

4.2.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2.1 색채

- ★ 가 주변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서울색의 경관별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 나 목재 사용 시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 다 최소한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4.2.2.2 형태

- ★ 가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나 최소한의 구조와 개방성이 확보되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4.2.2.3 설치

- 가 그늘막 지붕 아래의 휴지통 설치하는 지양한다.



그림 16. 단한 구조, 공원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및 형태

- 나 그늘막과 벤치는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두 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재료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 다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가로등 등 주변 조명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 라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2.2.4 기타

- 구조물의 식생녹화를 권장한다.



그림 17. 구조물에 식생녹화를 도입한 예

4.3 위생 시설물: 휴지통

4.3.1 현황 및 문제점

-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색채, 형태, 재료를 사용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 고광택 금속 재료 사용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
- 분리 수거 휴지통에 국제 표준 픽토그램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 무계획적이며 즉흥적인 부착물들로 시각적 공해를 유발한다.



그림 18.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자치구 고유색 적용

4.3.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2.1 색채

- 서울색을 참조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의 사용을 지양한다.<‘서울색의 경관별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4.3.2.2 형태

- ★ 가 수거,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게 한다.
- ★ 나 휴지통 내 수분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디자인한다.
- ★ 다 동물(고양이, 비둘기 등)의 내부 접근을 막도록 디자인한다.
- ★ 라 쓰레기 투입이 편리하게 한다.
- ★ 마 쓰레기 투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구를 윗면으로 개방하지 않도록 한다.
- 바 재활용 분리 수거 휴지통을 권장하며, 이 경우 분리 수거 식별 및 인식이 용이하도록 한다.
- 사 바닥 점유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벽면 부착형을 권장한다.
- 아 쓰레기 적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의 곡면처리를 권장한다.



그림 19. 간결한 분리 수거 휴지통의 예



그림 20. 쓰레기 적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의 곡면처리

4.3.2.3 재질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4.3.2.4 설치

- ★가 금연 구역에는 재떨이 설치를 금지한다.
- ★나 휴게 시설물에 인접 설치 시 사용자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
- 다 쓰레기 발생 예상 지역 검토 후 설치를 권장한다. (예: 건물목, 지하철 출입구, 버스승차대 주변, 공원, 상가 밀집 지역 등)
- ★라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3.2.5 그래픽 요소

- 분리수거 휴지통에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그림 21. 국가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한 휴지통

4.4 위생 시설물: 공중화장실 (부스형)

4.4.1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못하며, 유지 보수가 미흡하다.
-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국제 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4.4.2 디자인 가이드라인

4.4.2.1 색채

-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한다.

4.4.2.2 형태

- 가 출입구는 다양한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폭을 최소 1.0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나 출입구에 문턱을 없앤다.
- ★다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한다.
- ★라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4.4.2.3 재질

- ★가 실내에는 내습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나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그림 22. 유지 보수가 미흡한 공중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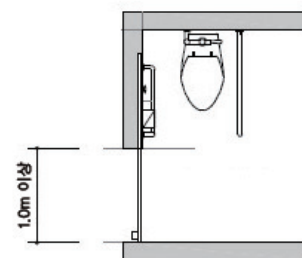


그림 23.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규정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한 출입문 유효폭 참고
 - 출입문 유효폭 0.8m 이상

4.4.2.4 설치

- 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 나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경우 남녀 사용자의 동선과 시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출입로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 다 보도에는 설치 규모와 개수를 최소화한다.
- ★ 라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24. 간결한 형태의 부스형
공중화장실

4.5 위생 시설물: 음수대

4.5.1 현황 및 문제점

- 주변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이 부족하다.
- 모서리가 날카로워 상해의 위험이 있다.
-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림 25.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음수대

4.5.2 디자인 가이드라인

4.5.2.1 색채

-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4.5.2.2 형태

- ★ 가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나 장식적 요소의 남용을 금지한다.
- 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무릎을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권장한다.
- 라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마 크기 및 구조 결정시 <한국인 인체 지수 조사>참조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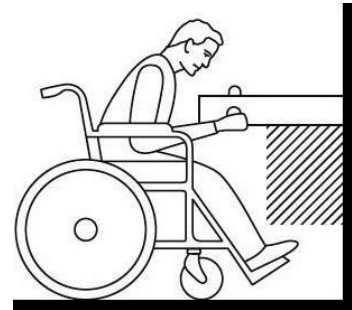


그림 26. 휠체어 사용자 배려

4.5.2.3 재질

- 가 주변부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나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4.5.2.4 기타

- 가 청결, 배수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나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다 물의 낭비를 막도록 자동 잠금 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4.6 서비스 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4.6.1 현황 및 문제점

- 크기가 지나치게 크다.
- 재질 및 색채가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장식적 도안과 문자로 시각 공해를 일으킨다.
- 비가림 시설의 탈색, 찌든 때 등으로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



그림 27.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자치구별 고유색 적용, 무의미한 도안과 문자 사용

4.6.2 디자인 가이드라인

4.6.2.1 색채

- 가 페인트 도색 시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도색을 지양한다.
- 나 고채도, 고명도의 색을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4.6.2.2 그래픽 요소

- ★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의 장식적 도안을 금지한다.

4.6.2.3 형태

- ★ 가 시야를 막는 비가림 시설(자전거 보관대 캐노피)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 나 기능 면에서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한다.
- 다 다른 구조물이나 공간 요소와의 결합을 권장한다.

4.6.2.4 재질

- ★ 자전거 보관, 회수 시 시설물 손상을 막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4.6.2.5 설치

- 가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가로등 및 주변 불빛을 이용한 설치를 권장한다.
- 나 블라드 등 다른 시설물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다 자전거 도로에 인접한 길가 또는 육교, 교량 등 구조물 하부, 공지 등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라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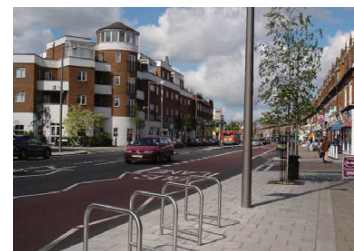


그림 28. 블라드 기능의 겸용을 고려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4.7 서비스 시설물: 관광 안내소 (부스형)

4.7.1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원거리에서 관광 안내소로 인식하기 힘들다.
- 이질적인 재료(벽돌, 폴리카보네이트, 스틸프레임 등)가 혼용된다.



그림 29.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재질, 조악한 장식 사용

4.7.2 디자인 가이드라인

4.7.2.1 그래픽 요소

- 가 표지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 나 알아보기 쉬운 명료한 서체와 크기, 색상을 사용하며 서울서체 사용을 권장한다.

4.7.2.2 형태

- 가 지역 정보물의 제공이 용이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나 규모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개방적인 구조와 형태를 권장한다.



그림 30. 간결하고 개방적인 구조와 형태의 사례

4.7.2.3 설치

- 가 관광객의 편의를 돕도록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을 권장한다.
- 나 무인 관광 정보 키오스크의 설치를 권장한다.
- ★ 다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7.2.4 재질

- 이질적인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4.7.2.5 기타

- 가 무인 관광 정보 키오스크 설치 시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발광다이오드(LED)나 LCD를 이용한 정보 전달과 음성 서비스 기능의 겸비를 권장한다.
- 나 무인 관광 정보 키오스크 설치 시 조작부는 일반 사용자와 휠체어 사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4.8 서비스 시설물: 공중전화 부스

4.8.1 현황 및 문제점

- 공간 및 사용 빈도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
- 형태 및 색채, 픽토그램, 통신사 표시가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
- 지면과의 결합 부위에서 사용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림 31.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

4.8.2 디자인 가이드라인

4.8.2.1 색채

- <서울색>의 적절한 활용을 권장한다.

4.8.2.2 형태

- 가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
- 나 방음형 부스(문이 닫히는 구조)의 경우 내부가 보이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4.8.2.3 설치

- 가 공중전화 부스의 바닥면과 보도의 높이가 같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나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을 권장한다. (예: 우체통, 생활 정보지 배포대 등)
- 다 사용자 안전과 파손 행위 방지를 위한 조명(동작 센서 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 라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32. 간결하고 개방적인 디자인의 예

4.8.2.4 기타

- ★ 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 공중전화 부스 설치 시 서울디자인위원회와 협의한다.
- ★ 나 부스 내부 청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며, 특히 전화기의 위생에 유의한다.
- 다 단독 부스 설치 시 일반 사용자와 장애인, 아동 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가 다른 공중전화기 설치와, LCD, 음성 서비스 등 정보 전달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4.9 서비스 시설물: 우체통

4.9.1 현황 및 문제점

- 지면과의 결합 부위에서 심미성이 부족하다.
- 수직 상태 유지 및 주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4.9.2 디자인 가이드라인

4.9.2.1 형태

- ★ 가 투입구의 높이는 어린이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참조)
- ★ 나 우편물의 양을 고려하여 크기를 최소화한다.

4.9.2.2 설치

- 가 벽면 부착형의 도입 및 다른 시설물(공중전화 부스 등)과의 통합을 권장한다.
- ★ 나 지면 결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처리한다.
- ★ 다 수직으로 설치한다.
- ★ 라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9.2.3 기타

-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 우체통 설치 시 서울디자인위원회와 협의한다.



그림 33. 주변 관리가 되지 않음



그림 34. 지면과의 결합 부위가 미려하지 않음



그림 35. 지면부위의 미려한 마감처리

4.10 판매 시설물: 가로 판매대

4.10.1 현황 및 문제점

- 재질 및 색채가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판매대 외부에 판매 물품 등을 적재하여 보행을 방해한다.
- 임의로 부착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

4.10.2 디자인 가이드라인

- ★ 가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 ★ 나 형태, 색채, 부착물 등의 사항은 <표준형 디자인> 개발 지침을 따른다.



그림 36.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재질 및 색채

- ★ 다 <표준형 디자인>에 지정된 사항 이외의 요소 설치나 임의 변형(외부 공간 물품 적치, 그늘막 등 형태 변경, 지나치게 강렬한 색채 사용 등)을 금지한다.
- ★ 라 허가된 광고물 및 홍보물 이외에는 외부 부착 및 설치를 금지한다.
- ★ 마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37. 간결한 형태와 색채를 적용한 가로 판매대 디자인의 예

4.11 통행 시설물: 버스 정류장 쉼터

4.11.1 현황 및 문제점

- 자치구별로 형태, 재질, 색상의 차이가 크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부착물이 많으며, 형태, 크기, 설치 위치가 보행을 방해하는 예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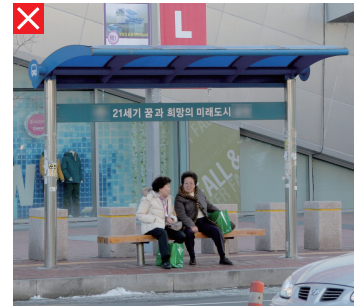


그림 38.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간결하지 않은 형태의 예

4.11.2 디자인 가이드라인

4.11.2.1 색채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색 사용은 지양한다.

4.11.2.2 형태

- ★ 가 보도폭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여 설치한다.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참조)
- ★ 나 운전자와 승차를 기다리는 승객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 다 광고물 부착판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라 중앙차로 버스승차대에서 승하차 승객의 통행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쉼터 바람막이 등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39.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 간결하고 개방적인 형태의 예

4.11.2.3 재질

- ★ 승차대 벽면에는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투명 재료를 사용한다.

4.11.2.4 설치

- 가 휴지통은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되, 쉼터 내부 및 아래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 나 연계 가능한 시설물(공중전화, 벤치 등)과의 통합을 권장한다.
- 다 승객의 안전과 파손 행위 방지를 위하여 조명과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라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12 통행 시설물: 택시 정류장 쉼터, 마을버스 정류장 쉼터

4.12.1 현황 및 문제점

- 형태, 재질 및 색채가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택시 정류장 쉼터의 경우 과다 설치된 예가 많다.

4.12.2 디자인 가이드라인

4.12.2.1 색채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색 사용은 지양한다.

4.12.2.2 형태

- ★ 가 운전자와 승객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 나 광고물 부착판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다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구조체로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4.12.2.3 재질

-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투명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4.12.2.4 설치

- 가 연계 가능한 시설물(공중전화, 벤치 등)과의 결합을 권장한다.
-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40.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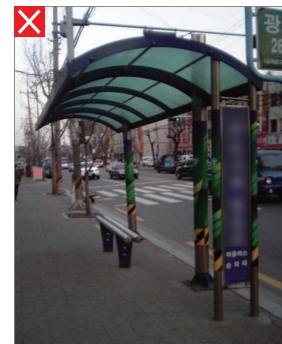


그림 41.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간결하지 않은 형태

4.13 통행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4.13.1 현황 및 문제점

- 불필요한 캐노피 설치로 인하여 주변 건물과 가로경관을 가린다.
- 지나치게 장식적인 형태의 캐노피로 인하여 시각적 혼란을 유발한다.



그림 40.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형태와 색채

4.13.2 디자인 가이드라인

4.13.2.1 재질

- 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무색 투명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나 유리 사용 시 투명도가 높은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4.13.2.2 설치

- 가 지하철 출입구의 캐노피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모를 최소화하고 디자인을 간결하게 한다.
- 나 자전거 보관대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을 권장한다.
- ★ 다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13.2.3 기타

- ★ 에스컬레이터에는 미끄럼 방지 디자인을 적용한다.



그림 41. 구조를 최소화한 캐노피 디자인의 예

4.14 통행 시설물: 지상 노출 승강기

4.14.1 현황 및 문제점

- 고광택 금속 재료 남용과 고채도 색 유리 사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지나치게 큰 규모와 경사로 등의 설치로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



그림 42.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지나치게 큰 규모로 보행 방해

4.14.2 디자인 가이드라인

4.14.2.1 색채

-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한다.

4.14.2.2 형태

- ★ 가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나 별도 경사로 등의 설치를 대신하여 진입로를 보도의 기울기와 일치시킬 것을 권장한다.
- 다 내부 장치는 반투명 재료를 이용하여 가릴 것을 권장한다.
- 라 지하철 캐노피가 설치된 경우 캐노피와 연속성 있는 형태의 적용을 권장한다.

4.14.2.3 재질

- 가 벽면에는 무색 투명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림 43. 투명도 높은 재료 사용의 예

- 나 유리 사용 시 투명도가 높은 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 다 고풍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4.14.2.4 설치

- 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보도 점유 면적과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 나 주 사용자인 교통약자를 배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규정을 참고하여 디자인한다.
- ★ 다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14.2.5 기타

-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대비, 통풍이 원활한 구조를 권장한다.

4.15 통행 시설물: 보도블록

4.15.1 현황 및 문제점

- 한 공간에 여러 다른 블록이 사용되어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 자극적인 색채가 사용된 예가 많다.
-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 부위 마감 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그림 44. 의미 없이 서로 다른 패턴의 블록 적용, 유지·관리 상태 불량

4.15.2 디자인 가이드라인

4.15.2.1 색채

- ★ 가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금지한다.
- 나 자극적인 고채도 색 사용은 지양한다.
- 다 한 구간에서 여러 색채, 패턴의 무분별한 혼용은 지양한다.

4.15.2.2 형태

- 가 단위 크기가 되도록 큰 보도블록을 권장한다.
- 나 요철이 심한 보도블록은 지양한다.
- ★ 다 요철이 있는 보도블록 사용 시 블록 간 경계의 단차가 없도록 한다.

4.15.2.3 설치

- ★ 가 평탄성을 유지하며, 보도블록 간 틈새가 치밀하도록 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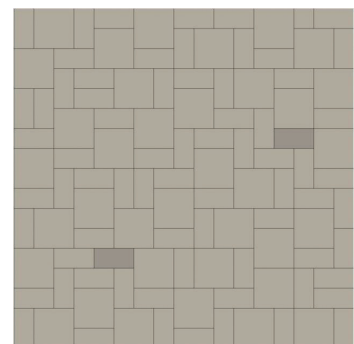


그림 45. 차분한 색채와 패턴의 예

- ★ 나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 ★ 다 횡단보도 진입 지점, 보행 연계 구간 등 보차도 경계에 경사면을 두는 경우, 블록의 형태와 배열이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치한다.
- 라 보도블록 설치 후 잉여 공간의 시멘트(모르타르) 처리는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도블록과 같은 색채의 시멘트를 사용한다.
- ★ 마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건설교통부)을 따른다.

4.16 통행 시설물: 점자블록

4.16.1 현황 및 문제점

- 점자블록 위로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장애인에게 혼란과 신체적 장애를 준다.
- 보도 끝부분의 마감 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그림 46. 점자블록 위로 블라드가 설치되어 안전한 통행을 방해

4.16.2 디자인 가이드라인

4.16.2.1 색채

- ★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금지한다.

4.16.2.2 설치

- 가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히 마감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나 보도블록과의 간격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 다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16.2.3 기타

- ★ 기타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4.17 통행 시설물: 보차도 경계석

4.17.1 현황 및 문제점

-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이 심하다.

- 보행 연계 구간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4.17.2 디자인 가이드라인

4.17.2.1 색채

- ★ 바닥색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한다.

4.17.2.2 형태

- ★ 가 보행 연계 구간 보차도 경계의 모서리 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처리한다.

- ★ 나 차로변 보차도 경계석의 높이는 25cm 이하로 한다.

4.17.2.3 재질

- ★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4.17.2.4 설치

- 가 횡단보도 진입 지점, 보행 연계 구간 등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는 보차도 간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17.2.5 기타

- 보차도 경계석 침하, 파손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권장한다.



그림 47. 주변 보도블록에 조화되는 점자블록의 예



그림 48. 손상이 심한 보차도 경계석



그림 49. 보차도 경계의 턱을 일절 두지 않은 예

4.18 통행 시설물: 육교

4.18.1 현황 및 문제점

- 기능과 무관한 고채도 색채가 흔히 사용된다.
- 부속 시설물 결합 부위의 심미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4.18.2 디자인 가이드라인

4.18.2.1 색채

- ★ 도시경관의 배경이 되도록 저채도, 저명도의 색을 적용한다.

4.18.2.2 그래픽 요소

- 문자나 슈퍼그래픽, 장식의 남용은 지양한다.

4.18.2.3 형태

- ★ 가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조명 사용을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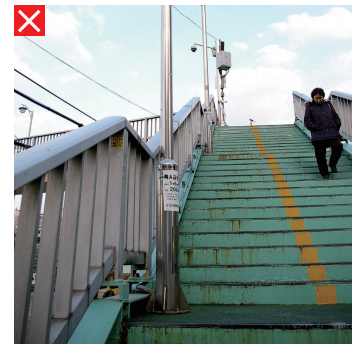


그림 50. 무의미한 고채도 색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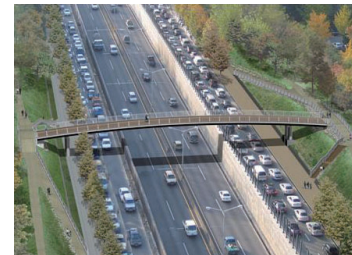


그림 51. 주변 언덕길을 이용한 간결한 구조의 육교

- ★ 나 본 구조물을 압도하지 않는 간결한 구조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 다 기둥 등의 지면 접합부를 미려하게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라 도시 경관에 부담을 주는 긴 경사로, 나선형 경사로 설치는 지양한다.

4.18.2.4 설치

- 가 육교 아래에 보행자의 머리 보호를 위한 장치 및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18.2.5 기타

- 명확한 테마 지역, 특화 지역에서는 입지 위치의 경관에 조화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4.19 통행 시설물: 교량

4.19.1 현황 및 문제점

- 장식적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
- 다른 시설물과 연결되는 부분의 심미성이 떨어진다.



그림 52. 결합 부위의 심미성 부족

4.19.2 디자인 가이드라인

4.19.2.1 형태

- ★ 가 설치 지역 특성에 맞게 기능성을 우선시하여 디자인한다.
- ★ 나 교량 상부에 기능과 무관한 장식 설치를 금지한다. 단, 상징이 필요한 교량에는 장식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다 입지 경관에 조화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라 길이가 짧은 교량은 되도록 교각이 없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4.19.2.2 설치

- ★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19.2.3 기타

- ★ 가 교량에 속한 시설물(가로등, 펜스, 보도 등)은 대상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 나 주변 도로, 보행로, 산책로 등과 재질, 색채, 형태가 연계를 이루도록 한다.
- 다 진입부에는 주변 보도와 연속성 있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 라 경관 조명 관련 사항은 <서울시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 <서울시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9) 참조.

4.20 통행 시설물 : 고가차도

4.20.1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색채가 사용된다.
- 구조물 하부의 규정된 활용계획 부재로 불법 적재 공간으로 사용되며, 도시미관을 훼손한다.



그림 53.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의
고가차도 광고물

4.20.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0.2.1 색채

- 고채도, 고명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한다.

4.20.2.2 형태

- 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구조체로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나 기능면에서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한다.

4.20.2.3 그래픽 요소

- ★ 가 상업광고 부착은 지양한다.
- ★ 나 슈퍼그래픽의 사용을 금지한다.

4.20.2.4 기타

- 가 고가차도에 속한 시설물(가로등, 펜스, 등)은 대상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나 기둥 및 벽면부 녹화계획을 통해 심미성을 높인다.
- 다 고가차도의 조명계획은 '서울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참조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라 화단, 자전거 보관대, 보행섬 등의 조성을 통한 고가차도의 하부공간 활용을 권장한다.
- ★ 마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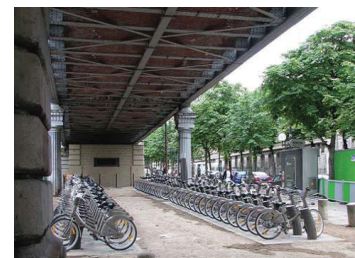


그림 54.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통한
고가차도 하부공간의 활용 사례

4.21 녹지 시설물: 가로 화분대 (플랜터)

4.21.1 현황 및 문제점

- 디자인이 산만하다.
- 자연 재료를 인위적으로 모방하여 이질감을 보인다.
- 관할 자치구 등의 명기가 지나치게 두드러진다.
- 필요 이상의 크기로 보행 공간을 침해한다.



그림 55. 장식적인 형태, 지나치게 두드러지는 문자 표기

4.21.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1.2.1 색채

- 가 목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은 지양한다.
- 나 단일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4.21.2.2 그래픽 요소

- 과장된 패턴이나 문자의 남용은 지양한다.

4.21.2.3 형태

- ★ 가 물 공급과 재수가 고려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 나 자연물을 모방한 형상, 패턴의 사용은 지양한다.

4.21.2.4 재질

- 가 플라스틱 등 인공 재료는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나 목재 사용 시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권장한다.

4.21.2.5 설치

- 가 벤치나 블라드, 가로수 보호 덮개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을 권장한다.
-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57. 가로 화분대와 벤치, 보호 덮개의 기능이 통합된 예

4.22 녹지 시설물: 가로수 보호 덮개, 가로수 지주대

4.22.1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적용으로 산만한 경관을 조성한다.
- 관리 및 청소가 용이하지 않다.

4.22.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2.2.1 색채

- 가 단일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나 보도블록 등에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4.22.2.2 형태

- ★ 가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단순화한다.
- ★ 나 가로수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 가로수 보호 덮개와 통일성 있게 디자인한다.
- 다 사각형 형태를 권장한다.
- 라 가로수 보호 덮개 하부의 청소가 용이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마 보도 패턴과 나무의 특성에 맞는 패턴 및 형태를 권장한다.

4.22.2.3 재질

- 플라스틱 등 내구성이 약한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4.22.2.4 설치

- ★ 가 보도와 높이를 같게 하여 설치한다. 단, 식물의 원활한 뿌리 호흡을 위하여 가로수 보호 덮개 아래 공간을 확보한다.
-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 2)을 따른다.

4.22.2.5 기타

- 시설 주체, 제작 업체 등의 표기는 지양한다.



그림 56.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



그림 57.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디자인의 예

4.23 보호 시설물: 볼라드

4.23.1 현황 및 문제점

- 장식적인 형태와 색채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불필요한 문자가 표기된 사례가 많다.
- 필요 이상의 수량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다.
-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경우가 있다.

4.23.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3.2.1 색채

- 가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색 사용은 지양한다.



그림 58. 자극적이고 장식적인 색채와 형태의 예

- 나 기능적 색채(예: 노란색·흰색의 반사체) 적용 시, 지나치게 넓은 면적의 적용을 지양한다.

4.23.2.2 형태

- ★ 가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나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형태나 재질 등을 적용한다.
예)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다.
- ★ 다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 라 보도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한다.

4.23.2.3 재질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탄성을 가진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한다.

4.23.2.4 설치

- ★ 가 사람 또는 차량 이동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한다.
- ★ 나 경사면에도 수직으로 설치한다.
- 다 보행 연계 구간 등 보차도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낮은 볼라드의 설치는 지양한다.
- 라 다른 시설물과 볼라드 기능의 통합을 권장한다.
- ★ 마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을 따른다.



그림 59. 간결한 형태, 저채도 색 적용의 예

4.24 보호 시설물: 보호 펜스 (방호 울타리)

4.24.1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장식적인 패턴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고광택 금속 재료의 직접적인 노출로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

4.24.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4.2.1 색채

- 가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단, 페인트 도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 색의 혼용은 지양한다.
- 나 기능적 색채(예: 노란색·흰색의 반사체)의 반사체를 띠 등의 형태로 적용 시, 색채나 장식의 남용은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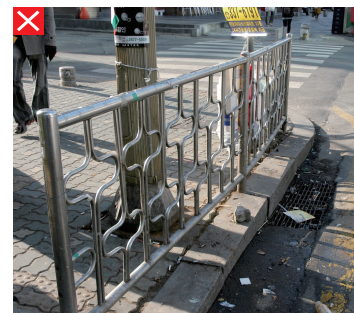


그림 60. 고광택 재료 노출, 지나치게 복잡한 패턴 적용의 예

4.24.2.2 그래픽 요소

- 문자나 로고, 관할 자치구 표기는 지양한다.

4.24.2.3 형태

- ★가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나 판상 구조는 지양한다.

4.24.2.4 재질

- 가 보도와 차도를 나누는 경계 펜스에는 차량 충돌에 대비하여 튼튼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나 보도와 녹지를 나누는 경계 펜스에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다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4.24.2.5 설치

- 가 보호 펜스는 되도록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과 통합 설치하며, 도로폭이 충분한 경우 생울타리 등으로 대체할 것을 구장한다.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61. 간결한 구조와 반사체 사용의 예



그림 62. 보호펜스 대신 녹지대 및 벤치 설치



그림 63. 식재와 분수, 페이빙 차별화 등을 통해 보호펜스 대체

4.25 보호 시설물: 방음벽

4.25.1 현황 및 문제점

-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판상 구조로 경관을 가로막는다.
- 불필요한 장식적 구조나 패턴이 남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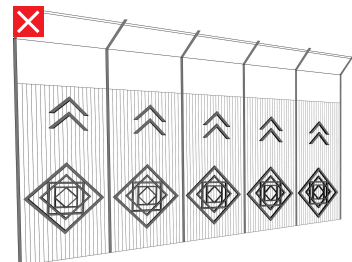


그림 64.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의 예

4.25.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5.2.1 그래픽 요소

-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적용은 지양한다.

4.25.2.2 형태

- 가 높이 차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각적 균형감을 주도록 방음벽 높이의 완만한 조절을 권장한다.
- 나 획일적인 형식의 기성품 사용은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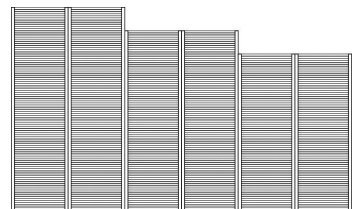


그림 65. 높이가 다른 방음벽 처리의 예

4.25.2.3 재질

- 가 조망,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투명한 재료의 방음벽 설치를 권장한다.
- 나 여러 재료의 불필요한 혼용은 지양한다.

4.25.2.4 설치

- 가 시야를 차단하는 방음벽 설치는 지양한다.
 - 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 구조물에 조화되도록 연속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다 가로에 면하는 학교, 공동주택 등의 경우 가능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고 녹지대나 화단을 조성하도록 한다.
- ★ 라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66. 투명 재료 방음벽 설치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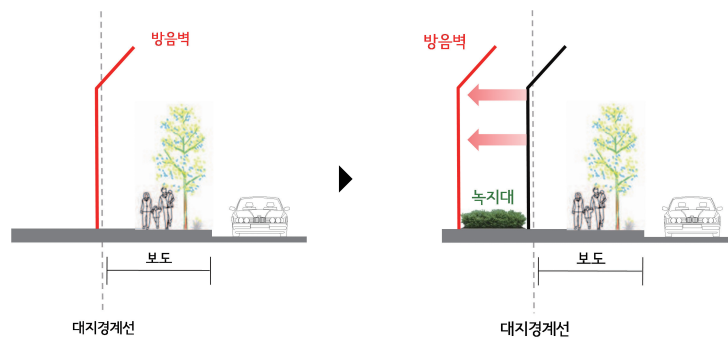


그림 67. 방음벽 설치시 녹지대 형성을 위한 대지경계선에서 이격

4.25.2.5 기타

- 가 야간 조명 또는 식물과의 연계를 권장한다.
- 나 가능한 경우 방음림 조성을 권장한다.

4.26 보호 시설물: 도로변 옹벽

4.26.1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장식적인 벽화 및 슈퍼그래픽의 남용으로 도시 경관을 혼잡하게 한다.
- 자연 재료를 조잡하게 모방한 패턴 남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그림 68. 복잡한 슈퍼그래픽으로 혼잡스러운 옹벽의 예

4.26.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6.2.1 그래픽 요소

- ★ 가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벽화 및 슈퍼그래픽의 남용을 금지한다.
- 나 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적용은 지양한다.

4.26.2.2 형태

- ★ 가 옹벽의 높이는 사면 안전 확보 범위에서 최소화한다.
- 나 패턴이 인지되지 않도록 패턴 단위의 크기를 조절할 것을 권장한다.

4.26.2.3 재질

- 벽면 녹화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마감 처리를 권장한다.

4.26.2.4 설치

- 가 배수구는 유출수의 흔적이 옹벽에 누적되지 않도록 내림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26.2.5 기타

- ★ 가 예술 공간화 등의 목적으로 특수한 옹벽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나 기타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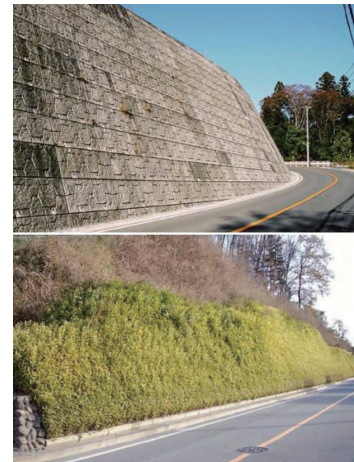


그림 69. 일반 옹벽(위)과 벽면을 녹화한 옹벽(아래) 비교

4.27 보호 시설물: 터널 전면부 옹벽

4.27.1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장식적인 벽화 및 슈퍼그래픽의 남용으로 도시 경관을 혼잡하게 한다.

- 불필요한 구조물이나 조명이 설치되어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4.27.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7.2.1 그래픽 요소

- ★ 구조적,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벽화 및 슈퍼그래픽의 남용을 금지한다.

4.27.2.2 형태

- ★ 가 기능과 무관한 구조물, 상업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나 주행로, 옹벽, 입출구가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4.27.2.3 재질

- 가 입구 입면과 연속성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나 벽면 녹화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마감 처리를 권장한다.



그림 70. 화려한 슈퍼그래픽으로 경관을 훼손한 예

4.28 보호 시설물: 무단횡단 방지 시설

4.28.1 현황 및 문제점

- 색채의 남용과 통일성 없는 형태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 다양한 문자나 픽토그램이 남용된다.
- 지면 결합 부위의 심미성이 부족하다.

4.28.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8.2.1 그래픽 요소

- ★ 규정된 금지 문구 및 픽토그램 이외의 그래픽 요소를 금지한다.

4.28.2.2 설치

- 무단횡단 방지 시설의 설치는 지양한다.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4.28.2.3 색채

- 기능적 색채(예:노랑색, 흰색의 반사체)를 시설물 전체가 아닌 띠 등의 부분적인 형태로 적용한다.

4.28.2.4 형태

- 기능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그림 71.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색채, 심미성이 부족한 지면 결합 부위의 예



그림 72. 주변 환경을 고려한 형태 및 색채 적용의 예



그림 73. 무단횡단 방지 시설 색채 및 형태

4.29 보호 시설물: 신호등주

4.29.1 현황 및 문제점

- 등주에 부착된 시설물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 지면과의 결합 부위에서 심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림 74. 지면 결합 부위 마감 처리의 심미성 부족

4.29.2 디자인 가이드라인

4.29.2.1 그래픽 요소

- 장식적 문양, 자치구 상징물의 설치는 지양한다.

4.29.2.2 형태

★ 가 부착 시설물(보행자 작동 신호기, 안내 표지, 휴지통 등)은 등주와 일체감을 주도록 디자인한다.

★ 나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4.29.2.3 설치

★ 가 지면 결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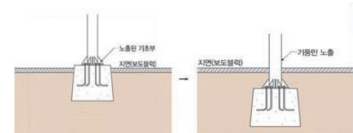


그림 75. 지지대와 앵커볼트의 매립을 통한 미려한 지면 결합 부위 마감 처리

4.29.2.4 기타

- 가 음향 신호기의 확대 설치를 권장한다.
- 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의 대안(특수 도로 사용 등) 모색을 권장한다.

4.30 관리 시설물: 지상 기기 (분전반, 배전반 등)

4.30.1 현황 및 문제점

- 크기가 지나치게 커 보행을 방해한다.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지나치게 장식적인 그래픽 요소 적용으로 혼란을 일으킨다.

4.30.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0.2.1 색채

- 무채색 단색 사용을 권장한다.

4.30.2.2 그래픽 요소

- 색채 도안이나 슈퍼그래픽 등 기능과 무관한 장식 적용은 지양한다.

4.30.2.3 형태

- ★ 가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 나 크기를 최소화한다.
- ★ 다 시각적으로 안전하게 보이고 보행을 위협하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4.30.2.4 재질

- 먼지 제거가 용이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4.30.2.5 설치

- 가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나 콘크리트 받침대는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그 너비를 기기와 동일하게 한다.
- ★ 다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30.2.6 기타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의 대안(특수 도로 사용 등) 모색을 권장한다.

4.31 관리 시설물: 교통 신호 제어기

4.31.1 현황 및 문제점

- 보행에 방해가 되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지면 결합 부위의 마감 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4.31.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1.2.1 색채

- ★ 규정된 기능성 색 이외에는 무채색의 단색을 적용한다.



그림 76. 화려한 슈퍼그래픽으로 혼잡

4.31.2.2 형태

- ★ 가 지붕을 씌우지 않는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나 크기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4.31.2.3 설치

- 가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을 권장한다.
-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31.2.4 기타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의 대안(특수 도로 사용 등) 모색을 권장한다.



그림 77. 보도 위 설치로 보행 방해, 지나치게 명시성 높은 색채 사용

4.32 관리 시설물: 맨홀

4.32.1 현황 및 문제점

- 형태와 패턴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 보도블록과 이질감이 강한 색채, 재료의 사용으로 도시 경관을 혼잡하게 한다.
-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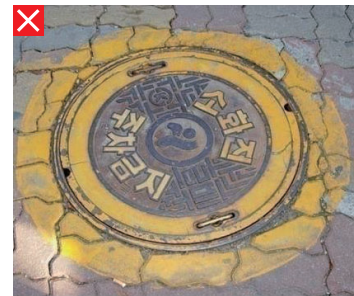


그림 78. 지면에 조화되지 않는 재료 및 색채 사용

4.32.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2.2.1 색채

- ★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금지한다.

4.32.2.2 그래픽 요소

- 가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문자는 보행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 나 하수맨홀 뚜껑에는 우수와 오수를 구분하여 명기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79. 보도면과 연속성을 이루는 디자인 예

4.32.2.3 형태

- ★ 보도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나 맨홀의 형태와 같은 하나의 판으로 디자인 한다.

4.32.2.4 설치

- ★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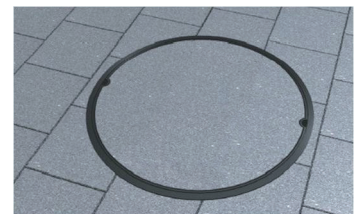


그림 80. 맨홀의 형태와 같은 하나의 판으로 디자인한 예

4.32.2.5 재질

- ★ 블록과 동일한 마감재나 유사한 질감의 재료로 마감한다.

4.33 관리 시설물: 트랜치

4.33.1 현황 및 문제점

- 휠체어, 유모차 바퀴 등이 빠져 통행에 지장을 받는다.
- 유지 관리가 불량하여 훼손된 경우가 많다.

4.33.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3.2.1 색채

- 재료 자체 색의 활용을 권장한다.

4.33.2.2 형태

- ★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의 바퀴가 끼지 않도록 정교하게 디자인한다.

4.33.2.3 재질

- ★ 형태가 유지되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4.33.2.4 설치

- ★ **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평탄하고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 81. 바퀴가 끼지 않도록 촘촘하게 디자인된 트랜치의 예

4.34 관리 시설물: 지하철 환기구

4.34.1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규모가 커 보행을 방해한다.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광고물의 과다 부착 등 유지 관리가 불량하다.

4.34.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4.2.1 그래픽 요소

- 색채 도안이나 슈퍼그래픽 등 기능과 무관한 장식 적용은 지양한다.

4.34.2.2 형태

-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크기와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4.34.2.3 재질

- 자연 친화적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4.34.2.4 설치

- ★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34.2.5 기타

-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 및 연계를 권장한다.



그림 82. 보행을 방해하는 규모



그림 83. 과장된 형태

4.35 관리 시설물: 제설시설

4.35.1 현황 및 문제점

-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은 색채가 사용된다.
- 시설물 주변부 관리 소홀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된다.

4.35.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5.2.1 색채

- 가 서울색을 참조하여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의 사용은 지양한다.
- 나 기능적 색채 (예:노란색, 흰색의 반사체)의 반사체 적용 시, 색채나 장식의 남용은 지양한다.

4.35.2.2 형태

- 가 기능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나 쓰레기 적치가 불가능하도록 덮개 부위를 곡면으로 처리한다.
- 다 시설물 내부로 우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디자인한다.
- 라 고정시설물이 아닌 제설시설의 이동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그림 84.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은 색채와 배치

4.35.2.3 그래픽 요소

- 가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의 장식적 도안을 금지한다.
- 나 문자나 로고, 관할 자치구 표기는 지양한다.

4.35.2.4 재질

- 시설물과 내용의 손상을 막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4.35.2.5 설치

- ★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36 관리 시설물: CCTV

4.36.1 현황 및 문제점

- 시설물의 독립지주의 사용으로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
- 고광택 금속재료의 사용으로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다.
- CCTV 지주의 지면부 결합 부위에 심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림 85. CCTV의 불필요한 단독지주 설치로 경관을 해치는 예

4.36.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6.2.1 색채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저채도, 저명도의 색상 적용을 권장한다.

4.36.2.2 형태

- 가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나 인접한 건축물 및 구조물의 디자인 요소와 연계된 형태로 디자인한다.



그림 86. 신호등과 통합된 지주를 사용하는 사례

4.36.2.3 재질

- 고광택의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4.36.2.4 설치

- 가 가능하면 단독 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다른 시설물(예 : 신호등)과의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 나 지면 결합부위를 미려하게 마감처리한다.

4.37 관리 시설물 : 버스전용 단속초소, 주차관리소 등

4.37.1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 형태와 색채를 그대로 노출한다.
-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으로 인해 가로경관이 훼손된다.



그림 87. 보행을 방해하여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버스전용 단속초소의 배치

4.37.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7.2.1 색채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저채도, 저명도의 색상 적용을 권장한다.



그림 88.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은 형태

4.37.2.2 형태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4.37.2.3 그래픽요소

- 가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의 장식적 도안을 자제한다.
- ★ 나 무분별한 광고물의 외부 부착 및 설치를 금지한다.
- 다 서울서체의 사용을 권장한다.

4.37.2.4 설치

- 가 가로상 설치를 지양하며, 공개공지 및 녹지대 등에 설치한다.
- 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 다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38 조명 시설물: 가로등주

4.38.1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친 장식, 조각한 자연물 형상, 관할 자치단체 상징물 등이 적용된 예가 많다.
- 고광택 재료 사용으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 고채도 색채 적용으로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
- 지면 결합 부위의 마감 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그림 89. 장식물 남용, 고광택 금속 재료 사용

4.38.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8.2.1 색채

- 가 단색 적용을 권장한다.
- 나 고채도 색이나 원색 사용은 지양한다.

4.38.2.2 형태

- 가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
- 나 배너걸이의 설치 지양한다.
- 다 장식이나 상징물의 남용 지양한다.

4.38.2.3 재질

- 고광택 재료의 사용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4.38.2.4 설치

- ★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38.2.5 기타

- 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의 대안(가로등주 개발, 특수 도로 사용 등) 모색을 권장한다.
- 나 가로등과 공공시각매체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중 ‘첨부: 통합지주 시각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 ★ 다 기타 사항은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편 조명시설>을 따른다.

*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사업(2008) 참조.

4.39 기타 시설물: 디지털 영상매체

4.39.1 현황 및 문제점

-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다.
- 구조물의 형태가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향후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 매체를 규정하기 어렵다.

4.39.2 디자인 가이드라인

4.39.2.1 형태

- ★가 형태, 크기, 색채 등이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한다.
- 나 전선 등 기재로 노출은 지양한다.

4.39.2.2 설치

- ★가 녹지, 주거, 문화재 지역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 ★나 크기 및 휘도 등을 고려하며,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4.39.2.3 기타

- 가 향후 디지털 영상매체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나 기타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 <서울시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8) 참조.

4.40 기타 시설물: 시계탑

4.40.1 현황 및 문제점

- 지주형 시계탑은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
- 고광택 재료 사용으로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 상업 광고의 무분별한 부착으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그림 90. 무분별한 상업 광고로 인한
시각적 혼란, 고광택 금속 재료 사용

4.40.2 디자인 가이드라인

4.40.2.1 그래픽 요소

- 무분별한 상업 광고 부착은 지양한다.

4.40.2.2 재질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권장한다.

4.40.2.3 설치

- 가 지주형 시계탑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랜드마크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 ★나 기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따른다.

4.41 기타 시설물: 상징 조형물, 벽화

4.41.1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미관을 저해한다.

4.41.2 디자인 가이드라인

4.41.2.1 설치

- ★ 보행 가로로 유요 보도폭 내에 상징 조형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4.41.2.2 기타

- 경관 향상을 위한 상징 조형물이나 벽화는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4.42 기타 시설물: 공사장 가림막·가림벽

* 지면에서 3.6m를 기준으로 높이가 그 이하인 시설물을 가림벽이라 하고, 그 이상인 시설물을 가림막이라 한다.

4.42.1 현황 및 문제점

- 공사장 편의에 따라 무질서하게 설치·운영되어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
- 대형 상업 광고판으로 남용된다.

4.42.2 디자인 가이드라인

- ★ 가 보행 가로 및 주변 지역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공사장 가림막·가림벽의 설치를 금지한다.
- 나 공사 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가림막 및 가림벽을 설치하되, 외관 디자인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